

더샵 분당센터로 민영주택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25.10.16.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본 주택은 '25.10.15. 이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해당하여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적용)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5255

주택유형	규제지역 여부(규제 전 모집공고 신청)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1.20.)로부터 3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5.12.31.(수)	2026.02.19.(목)	2026.02.24.(화)	2026.02.27.(금)	2026.03.03.(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2.19.(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4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3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595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2.24.(화)	2026.02.27.(금)	2026.03.03.(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더샵 분당센터로 분양홍보관 (10:00 ~ 13:00)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7, B1F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포함)와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부담하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매도인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매수인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씩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잔여세대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1.20.)로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66
- 공급규모 : 지하 3층, 지상 16~26층 7개동 총 647세대 중 잔여물량 50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시(타입)	잔여 세대수	잔여 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45	01	060.9400C	60C	1	405	0203
	02	071.5900D	71DA	1	404	0804
	03	073.5900B	73B2	2	401	0205
					405	0305
	04	078.4400N	78AN	20	407	0201, 0202, 0301, 0302, 0402, 0502, 0602, 0701, 0801, 1002, 1101, 1501, 1702, 1801, 1802, 1902, 2001, 2201, 2202, 2302
	05	084.0800N	84N	26	406	0201, 0202, 0301, 0302, 0401, 0402, 0501, 0502, 0602, 0701, 0702, 0801, 0901, 1001, 1101, 1201, 1202, 1601, 1701, 1801, 1901, 2001, 2002, 2101, 2201, 2301
합 계				50		

공급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층 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기간
						계약 시	2026.03.20.	2026.04.20.	2026.06.05.	2026.08.05.	2026.10.05.	2026.12.07.	2027.02.05.	
60C	2층	1	954,880,000	537,120,000	1,492,000,000	30,000,000	119,200,000	149,200,000	149,200,000	149,200,000	149,200,000	149,200,000	149,200,000	447,600,000
71DA	8층	1	1,166,080,000	655,920,000	1,822,000,000	30,000,000	152,200,000	182,200,000	182,200,000	182,200,000	182,200,000	182,200,000	182,200,000	546,600,000
73B2	2층	1	1,167,360,000	656,640,000	1,824,000,000	30,000,000	152,400,000	182,400,000	182,400,000	182,400,000	182,400,000	182,400,000	182,400,000	547,200,000
	3층	1	1,173,120,000	659,880,000	1,833,000,000	30,000,000	153,300,000	183,300,000	183,300,000	183,300,000	183,300,000	183,300,000	183,300,000	549,900,000

주택형	층 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기간
						계약 시	2026.03.20.	2026.04.20.	2026.06.05.	2026.08.05.	2026.10.05.	2026.12.07.	2027.02.05.	
78AN	2층	2	1,200,000,000	675,000,000	1,875,000,000	30,000,000	157,500,000	187,500,000	187,500,000	187,500,000	187,500,000	187,500,000	187,500,000	562,500,000
	3층	2	1,204,480,000	677,520,000	1,882,000,000	30,000,000	158,200,000	188,200,000	188,200,000	188,200,000	188,200,000	188,200,000	188,200,000	564,600,000
	4층	1	1,210,880,000	681,120,000	1,892,000,000	30,000,000	159,200,000	189,200,000	189,200,000	189,200,000	189,200,000	189,200,000	189,200,000	567,600,000
	5층	1	1,225,600,000	689,400,000	1,915,000,000	30,000,000	161,500,000	191,500,000	191,500,000	191,500,000	191,500,000	191,500,000	191,500,000	574,500,000
	6-8층	3	1,240,320,000	697,680,000	1,938,000,000	30,000,000	163,800,000	193,800,000	193,800,000	193,800,000	193,800,000	193,800,000	193,800,000	581,400,000
	10-14층	2	1,256,320,000	706,680,000	1,963,000,000	30,000,000	166,300,000	196,300,000	196,300,000	196,300,000	196,300,000	196,300,000	196,300,000	588,900,000
	15-19층	5	1,272,320,000	715,680,000	1,988,000,000	30,000,000	168,800,000	198,800,000	198,800,000	198,800,000	198,800,000	198,800,000	198,800,000	596,400,000
	20층 이상	4	1,278,080,000	718,920,000	1,997,000,000	30,000,000	169,700,000	199,700,000	199,700,000	199,700,000	199,700,000	199,700,000	199,700,000	599,100,000
84N	2층	2	1,313,280,000	738,720,000	2,052,000,000	30,000,000	175,200,000	205,200,000	205,200,000	205,200,000	205,200,000	205,200,000	205,200,000	615,600,000
	3층	2	1,317,760,000	741,240,000	2,059,000,000	30,000,000	175,900,000	205,900,000	205,900,000	205,900,000	205,900,000	205,900,000	205,900,000	617,700,000
	4층	2	1,326,080,000	745,920,000	2,072,000,000	30,000,000	177,200,000	207,200,000	207,200,000	207,200,000	207,200,000	207,200,000	207,200,000	621,600,000
	5층	2	1,338,880,000	753,120,000	2,092,000,000	30,000,000	179,200,000	209,200,000	209,200,000	209,200,000	209,200,000	209,200,000	209,200,000	627,600,000
	6-9층	5	1,353,600,000	761,400,000	2,115,000,000	30,000,000	18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634,500,000
	10-12층	4	1,369,600,000	770,400,000	2,140,000,000	30,000,000	184,000,000	214,000,000	214,000,000	214,000,000	214,000,000	214,000,000	214,000,000	642,000,000
	16-19층	4	1,385,600,000	779,400,000	2,165,000,000	30,000,000	186,500,000	216,500,000	216,500,000	216,500,000	216,500,000	216,500,000	216,500,000	649,500,000
	20층 이상	5	1,395,200,000	784,800,000	2,180,000,000	30,000,000	188,000,000	218,000,000	218,000,000	218,000,000	218,000,000	218,000,000	218,000,000	654,00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 개정 「주택법」 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대금에는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금의 10%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용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발코니확장 (유상옵션)

■ 발코니확장(유상옵션)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계약 시	2026.04.20	입주지정일
60C	7,000,000	700,000	1,400,000	4,900,000
71DA	6,000,000	600,000	1,200,000	4,200,000
73B2	8,000,000	800,000	1,600,000	5,600,000
78AN	9,000,000	900,000	1,800,000	6,300,000
84N	13,000,000	1,300,000	2,600,000	9,100,000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이 50% 이상 진행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공정상 전 세대는 ‘발코니확장형’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기타 가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계약 시	2026.04.20	입주지정일
키친핏 + 수납장 LG FIT&MAX (1도어)	FIT&MAX_냉동(GLASS) / BC1F4AA(GLASS) FIT&MAX_냉장(GLASS) / BC1L4AA(GLASS) FIT&MAX_김치(GLASS) / BC1K4AA(GLASS)	6,260,000	626,000	1,252,000	4,382,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APT 공급대금	신한은행	100-038-246764	무지개마을4단지리모델링주택조합
발코니확장	우리은행	1005-704-838677	(주)포스코이앤씨
추가 선택품목	우리은행	1005-403-299904	(주)더좋은공조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 401동 1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4011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청약신청 일정 및 당첨자 발표 일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2.27.(금) ~ 2026.03.08.(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2.27.(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팸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팸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청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온라인 인감증명서 제출 가능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청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증명원 등)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해당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당첨자 계약 체결

구분	계약기간	계약 장소	비고
계약체결	2026.03.03.(화), 10:00 ~ 13:00	· 더샵 분당센터로 분양홍보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7, B1F	☎ 1833-5255

※ 당첨자 이외의 타인 명의로의 계약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일정 및 정해진 시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계약의 권한은 자동 소멸됩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계약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아파트 1차 계약금(30,000,000원) 및 발코니확장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10%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계약금 입금내역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아파트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1/2씩 연대하여 균등 부담 ※ 수입인지 구입처 및 납부 금액 : 안내문 참조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포함)		· 홈페이지 서식 게시
			추가 개별통지 서류	해당자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외 모두)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안내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3.07.(토) 10시 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03.07.(토)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 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data-bbox="347 1230 2092 1415"> <thead> <tr> <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제53조 제9호 나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 <tr> <td>단독주택</td><td rowspan="2">85㎡ 이하</td><td rowspan="2">5억원</td><td rowspan="2">3억원</td></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 <tr> <td>제53조 제9호 나목</td><td>도시형 생활주택</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 나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53조 제9호 나목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 나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53조 제9호 나목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8 기타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확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더샵분당센터로.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무지개마을4단지리모델링주택조합	(주)포스코이앤씨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60, 406호 (구미동, 관보소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법인등록번호	135671-0037761	174611-0002979

■ 분양홍보관 안내 및 유의사항

분양홍보관 약도	분양 안내
	■ 분양홍보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7, B1F (정자동, 정자푸르지오시티2차) ■ 사 업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66 ■ 홈페이지 : https://더샵분당센터로.kr ■ 분양문의 : 1833-5255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